



CHUNGCHONGNAM-DO COUNCIL

2023

03

의정
정보

공감하는 소통의정 | 변화하는 선진의정 | 실천하는 책임의정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 ■ ■ 목 차 ■ ■ ■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전라남도 섬지역 생활용수 공급 지원 조례	3
전라남도 종가역사문화 진흥 조례	5
부산광역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	7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신안군 주민발명 특허출원 지원 조례	11
평택시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13
전주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5
부산광역시 북구 먼지털이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7

타 시·도 의회 주요동향

“서울시민이 ‘의정포커스’의 새 얼굴로”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진행 첫 ‘시민MC’ 공모	23
도민 ‘민생경제 위기’ 체감도 ↑ … 도의회·도 ‘일자리 창출’ 주력해야	25
6월 11일 출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 슬로건」 및 「의정 방침」 대국민 공모	28

최근 제·개정 법령

정부조직법	31
지방세법	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5
의료법 시행령	38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안양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 제5조제2항 등 관련	41
「부산광역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제3조 관련	44
「서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관련	4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제6항 관련	50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전라남도 섬지역 생활용수 공급 지원 조례

[시행 2023. 2. 28.] [전라남도조례 제5683호, 2023. 2. 28., 제정]

이 조례는 섬지역의 원활한 생활용수 공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섬에 거주하는 주민의 물 부족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지역”이란 전라남도민이 거주하는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생활용수”란 섬지역의 가정에서 마시고 생활하는 데 사용하는 물을 말한다.
3. “마을상수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
4. “소규모급수시설”이란 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섬지역 주민이 생활용수 부족 문제를 겪지 않도록 생활용수 공급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생활용수공급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섬지역에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전라남도 섬지역 생활용수공급계획(이하 “생활용수공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활용수공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 방향
2. 생활용수 공급 및 부족 현황
3. 생활용수 공급 시설 현황
4. 생활용수 공급 시설 설치, 개보수 방안
5.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섬지역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생활용수공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시·군의 생활용수 공급 및 시설 현황, 사업 추진 방향, 재정 상황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원활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설치 및 수질 관리
2. 수원지 축조 및 개보수, 안전진단
3. 해수담수화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4. 관로 설치 및 개보수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섬지역의 생활용
수 공급 및 부족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
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섬지역의 원
활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관련 정부 부
처, 시·군, 공공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
를 구축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종가역사문화 진흥 조례

[시행 2023. 2. 28.] [전라남도조례 제5685호, 2023. 2. 28., 제정]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 소재한 전통종가의 역사문화 유산을 보존·계승 및 활용을 통해서 종가의 역사문화 진흥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종가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종가 역사문화의 보존·계승 및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종가 역사문화 진흥 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진흥계획 수립·시행) 도지사는 종가 역사문화의 보존·계승과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종가 역사문화 보존·계승 및 진흥사업의 지원 기본방향 및 목표
2. 종가 역사문화 보존·계승 및 진흥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3. 종가 역사문화 보존·계승 및 진흥사업

발굴

4. 그 밖에 종가 역사문화 보존·계승 및 진흥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의 지원) 도지사는 종가 역사문화 보존·계승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종가 역사문화 보존·계승 및 진흥사업
2. 종가 역사문화 유산의 유지 관리 및 활용 사업
3. 종가 역사문화를 활용한 문화관광 및 행사에 관한 사업
4. 종가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5. 종가 역사문화 유산 통합 보존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종가 역사문화를 활용한 창업 및 교육 등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종가 역사문화 보존·계승 및 진흥에 관한 사업

제6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도지사 소

속으로 전라남도 종가 역사문화진흥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종가 역사문화 보존·계승 및 활용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2. 종가 역사문화 보존 진흥계획 수립 및 사업 지원
3. 종가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이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라남도 종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종가의 역사·자료·시설·관광·식품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관련 단체 임원 또는 전문가

4. 전라남도 종가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종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전라남도 종가단체나 전문성이 있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

[시행 2023. 7. 1.] [부산광역시조례 제6836호, 2023. 3. 1., 제정]

이 조례는 생식 능력에 손상이 우려되는 질병·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임력을 보존 지원하여 장래의 임신을 목적으로 하는 보조생식술 및 난임 예방을 위한 행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생식술”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시술을 말한다.
2. “가임력 보존”이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아의 생성보존과 그 준비행위 및 암 치료 전후에 임신가능성을 위한 호르몬 요법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되어야 한다.

1. 신청 당시 부산광역시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에 이른 사람부터 44세까지의 기혼여성
3. 질병·질환(생식 능력 손상이 우려되는 항암치료가 필요하거나 조기 생식기능부전 등)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중위소득 180% 이

하 이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제4조(가임력 보존 지원사업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임력 보존 지원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조생식술 및 가임력 보존 지원(한의학 제외)
2.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가임력 보존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예산규모 및 행정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른 난임치료 지원과 중복되지 않은 시술비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제4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신안군 주민발명 특허출원 지원 조례

[시행 2023. 3. 2.] [전라남도신안군조례 제2590호, 2023. 3. 2., 제정]

이 조례는 우수한 주민발명의 특허출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안군의 산업발전 및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발명”이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지역산업의 생산력 향상 및 사용자의 안전·편의를 위해 농림·수산분야 관련 기자재를 새로 개조·창작한 발명을 말한다.
2. “주민발명자”란 주민발명을 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발명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향상하여 권한 침해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고, 그 권리를 신속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군수는 주민발명자가 주민발명에 대하여 「특허법」에 따른 특허출원을 하고자 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작 비용
2. 자재 비용
3. 연구·개발 비용

4. 최초 출원·신청 비용

제5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의 승계) 군은 제4조에 따라 지원 받은 주민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다.

제7조(특허권의 등록) 군수는 특허권을 군이 승계하거나 특허출원 중인 주민발명이 특허 결정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와 같이 군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특허권자 : 신안군
2. 관리기관 : 신안군청
3. 등록기관 : 신안군수

제8조(주민발명장려금)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군 명의로 등록한 특허권에 대하여 주민발명자에게 주민발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주민발명장려금은 동일한 주민발명에 대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제9조(환수)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금의 전체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3. 사망, 관외 전출 또는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평택시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시행 2023. 2. 28.] [경기도평택시조례 제2228호, 2023. 2. 28., 제정]

이 조례는 평택시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사이버윤리 정립과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사이버권리침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 글이나 말, 영상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피해를 입혀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표현과 행위를 말한다.
3. “사이버윤리”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 개인 또는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가치판단 기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사이버권리침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사이버윤리 의식을 진흥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1.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을 위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과 관련된 기관·단체 간 연계방안
4. 그 밖에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와 관련한 상담·

치유 지원

3.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을 위한 인
력양성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을 위

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
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시장은 청소년 사이버권리
침해 예방 및 건전한 사이버윤리 정립을 위
하여 각급 학교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
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와 관련한 상담 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
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주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3. 7.] [전라북도전주시조례 제4001호, 2023. 3. 7., 제정]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자 도로를 말한다.
3. “도시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주택, 도시공원 등에 맨발걷기에 필요한 휴길과 세족대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도시공원조성 등에서 보도계획

시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을 총 보도의 최소 30% 이상 우선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시멘트·아스팔트·나무데크·야자매트 등으로 포장되지 않은 길로서 맨발걷기에 적합한 휴길을 말한다)의 조성·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맨발걷기로 인한 건강증진 체험사례 및 질병예방·치료 체험사례의 발굴·조사
5. 맨발걷기의 시민건강 및 시 건강보험예산 절감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6. 맨발걷기 관련 문화·예술·학술 사업
7.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포상)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먼지털이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2. 1.] [부산광역시북구조례 제1586호, 2023. 2. 1., 제정]

이 조례는 먼지털이기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먼지털이기 시설”이란 압축공기를 분사하는 등 다양한 기구를 이용하여 의복과 신발에 묻은 흙, 먼지 등 오염물을 털어내는 시설을 말한다.
2. “압축공기”란 먼지털이기 내 압축된 고압의 공기를 말한다.
3. “안전점검”이란 먼지털이기 시설을 검사하여 안전사고 요인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4. “유지관리”란 먼지털이기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시설물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먼지털이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먼지털이

기 시설에 대하여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먼지털이기 시설의 설치 및 관리 계획
2. 먼지털이기 시설의 유지관리기준
3. 먼지털이기 시설의 실태조사
4. 먼지털이기 시설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5. 그 밖에 먼지털이기 시설 이용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

제5조(시설 설치) 먼지털이기 설치하는 종합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먼지털이기 시설이 주변 환경에 끼치는 영향 및 주택지 등 현지어건 감안한 적합 여부
2. 이미 설치된 인접 시설과의 중복 설치 여부
3. 먼지털이기 시설 설치상 관련 법령 등 충족
4. 예상 이용자 수요

제6조(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먼지털이기 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안전점

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기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관리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시점검은 시설물의 파손 등으로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우 또는 그 밖에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위탁)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유지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에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지털이기 설치 및 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종합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먼지털이기 설치에 관한 사항
3. 먼지털이기 안전점검 및 위탁관리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원녹지 관련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공원녹지 관련 담당과장과 환경 관련 담당과장으로 한다.

1. 공원·녹지·산림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환경 분야에 식견과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
3. 북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산림행정 관련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

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제8조제3항의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위원직을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2조(주민참여) 구청장은 먼지털이기 시설의 안전한 사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민불편사항 건의, 고장 신고 등 주민참여를 권장할 수 있다.

제13조(홍보) 구청장은 먼지털이기 시설의 올바른 사용 방법, 안전사고 예방, 고장 시 안내 등에 관한 사항을 구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먼지털이기 위험요인, 안전기준 및 안전성 평가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지역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타 시·도 의회 주요동향

서울시의회

“서울시민이 ‘의정포커스’의 새 얼굴로”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진행 첫 ‘시민MC’ 공모

- ‘시민과 함께 만드는 의정’ 콘셉트 맞춰 ‘전문MC→시민MC’ 체제 변화
- 공모 통해 총 5명 시민MC 선발. ‘의정포커스’ 종합편 보조 MC로 활동
- 의정활동에 관심 있는 ‘18세 이상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

□ 앞으로는 서울시민이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의 면면을 담은 영상홍보물의 진행자 (MC)로 참여하게 된다.

□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는 서울시의회의 회기별 의정활동 및 성과를 알리는 영상홍보물 ‘의정포커스’를 진행할 시민MC 5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공모를 통해 ‘시민MC’를 선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 ‘의정포커스’는 지난 2002년부터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을 회기별로 제작하고 있는 영상홍보물로, 서울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 알아두면 유익한 조례 등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는 서울시의회의 대표 기획영상물이다.

□ 서울시의회 영상홍보물 ‘의정포커스’는 그간 외부 방송사의 전문MC가 진행을 맡아 왔으나 올해부터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의정활동’이라는 콘셉트에 발맞춰, 시의회 소속 아나운서와 시민MC가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제작 방식에 변화를 줄 예정이다.

□ 이번 공모를 통해 선발되는 시민MC 5명은 의정포커스 종합편에 회기별로 1명씩 출연해 보조MC로 활약하게 된다.

□ 시민MC는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에 관심 있는 18세 이상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1차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3월 20일(월) 2차 카메라 테스트 및 면접을 실시하며 3월 22일(수)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 서류제출기간은 3월 10일(금)부터 3월 16일(목)까지이며, 메일(whoami05@seoul.go.kr)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조경익 서울시의회 언론홍보실장은 “서울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시민이 직접, 시민의 목소리로 전달하는 ‘의정보커스의 첫 시민MC 공모’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넘어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강화방안 중 하나”라며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민 '민생경제 위기' 체감도↑... 도의회·도 '일자리 창출' 주력해야

-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경기도민 경제·일자리' 경기도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

- 道 거주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 명 대상으로 온라인 및 전화면접 조사 진행
- 경제상황 인식 질의에 '구조적 장기불황'(66.9%), '일시적 경기침체'(30.5%) 응답
- 올해 경제상황 과반이상 부정전망, 도의 경제위기 대응 부정평가 60.3% 달해
- 의회·도에 '고용안정'(39.2%), '생활비 감면'(19.5%), 경제취약계층 지원'(12.9%) 등 주문

경기도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구조적 장기불황'이나 '일시적 경기침체'로 인식하는 등 도민 대다수가 민생경제 위기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최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할 분야로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 불안정 해소'가 꼽혔다.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도민의 경제상황 체감도를 측정하고, 주민 맞춤형 경제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실시한 '2022년 5차 경기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경기도민 경제·일자리 인식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조사 내용은 도민의 경제상황 인식, 고용 및 일자리, 경기도일자리재단, 경제정책방향 등 4개 분야의 15개 문항이다.

먼저, '경제상황 인식'에 대해 살펴보면 '구조적 장기불황이다'(66.9%)와 '일시적 경기 침체다'(30.5%)라는 부정적 의견이 97.4%로 '경기침체가 아니다'(2.6%)라는 응답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경기침체의 원인에 대해 '러-우 전쟁, 미-중 갈등, 에너지 가격 등 글로벌 경제상황' 탓이라는 인식이 42.8%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정부 및 지자체 신속한 위기 대응 미흡'(20.2%),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14.5%),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8.9%), ‘신성장 동력 미비 등 경쟁력 약화’(6.9%), ‘민간소비 감소로 인한 내수 침체’(5.4%), ‘기타’(1.3%) 순으로 분석됐다.

올해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도민의 절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응답자의 54.6%가 ‘나빠질 것’으로 예측했고 34.1%가 ‘현재와 비슷할 것’으로 봤으며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11.3%에 불과했다.

경기도 경제위기 대응에 대한 여론은 긍정평가 39.7%, 부정평가 60.3%로 부정 평가율이 높았다. 경기도 경제정책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도민의 75.3%가 ‘지역화폐’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배달특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 저금리대출’ 등에 대한 인지도는 각각 44.7%, 45.3%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노력해야 할 분야로 도민의 39.2%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불안정 해소’(39.2%)라고 답했고, 이 밖에 ‘경기지역화폐, 청년 기본소득 등 생활비 감면’(19.5%), ‘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 경제취약계층 지원’(12.9%),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강화’(11.1%),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7.7%), ‘기업인 운영자금 등 융자지원’(4.8%), ‘창업 지원 및 창업공간 조성’(3.0%) 순으로 조사됐다.

일자리 기회 정도에 대해 도민 상당수가 긍정적으로 답했으나 실업자 전망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일자리 충분도’에 대해 ‘그렇다’(16.9%)와 ‘보통이다’(45.6%)라고 답한 비율이 ‘그렇지 않다’(37.5%)라는 부정답변 비율보다 우세했지만, 올해 실업자에 대해서는 ‘증가할 것’(40.5%)이라는 분석이 ‘감소할 것’(13.4%)이라는 전망에 비해 3배 이상 높았다.

특히, 도민에게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해 10명 중 3명 정도만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방위적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일자리재단 비인지는 66.5%로 인지도 33.5%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았다.

경기도가 실업자를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을 조사한 결과, ‘재취업을 위한 직업알선, 소개 등 정보제공’이라는 응답이 33.8%였고, ‘재취업을 위한 기술교육’이 20.8%, ‘실업 구제를 위한 취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이 20.3%로 재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실업대책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경제정책의 주요 정책방향으로 도민 과반수 이상이 ‘민생경제 회복’(52.9%)을 들었다. 이어 16.6%가 ‘차세대 성장동력 보강’을, 13.7%가 ‘사회안전망 등 포용성 강화’를, 9.7%가 ‘미래 과제 선제대응’을, 5.4%가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를

제안했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도민인식조사 결과는 도민의 구체적 의견과 바람이 반영된 중요 지표가 될 것”이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집행부, 공공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글로벌알앤씨㈜’에 의뢰해 지난 2월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및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는 $\pm 3.1\%$ 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6월 11일 출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 슬로건」 및 「의정 방침」 대국민 공모

□ 강원도의회(의장 권혁열)는

- 3월 6일부터 3월 20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 슬로건」 및 「의정 방침」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공모전은 오는 6월 11일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향해야 할 핵심 가치를 표현하는 문구를 공모하여 의정활동 목표로 삼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대국민 공모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범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 공모대상은

- 의정 슬로건과 의정 방침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향해야 할 의정방향 및 핵심가치를 20자 내외의 문구로 표현하면 된다.
-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공모 신청서는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한다.

□ 당선작은

- 2단계 심사(도의회 내부 및 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며, 3월 27일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 최우수작 입상자 1명에게는 의장 표창 및 상금 300만원, 우수작 입상자 2명에게는 각각 의장 표창 및 상금 100만원, 장려작 입상자 2명에게는 각각 의장 표창 및 상금 50만원이 수여된다.



최근 제·개정 법령

정부조직법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고, 전 세계에 퍼져있는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 및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시행을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23. 3. 14.] [법률 제19230호, 2023. 3. 14.,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세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취득기준을 명확히 하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기준을 새로 마련하며, 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표준세율을 조정하고, 종합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제도를 신설하며, 종합소득 중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확대하고, 내국법인에 대한 재해손실세액차감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주요내용

가.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부동산 취득 기준 명확화(제7조제4항 후단 및 같은 조 제 16항 신설)

- 1)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경우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조합원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각각 취득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
- 2)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건축물은 그 소유자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토지는 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을 초과한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함.

나. 별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 폐지(제13조제5항, 제16조제1항·제2항 및 제111조 제1항)

도시지역의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전반적인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별장을 더 이상 특정 계층만이 소유하는 고급 사치성 재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국민들의 인식변화를 고려하여 별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를 폐지함.

다.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제92조제1항 및 제103조의3제1항제8호·제9호)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1천 200만원 이하” 구간을 “1천 400만원 이하”로, “1천 200만원 초과 4천 600만원 이하” 구간을 “1천 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4천 6백만원 초과 8천 8백만원 이하” 구간을 “5천만원 초과 8천 8백만원 이하”로 조정함.

라. 개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 제도 도입(제93조제7항 후단 및 제95조제4항 신설)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세액과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각각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마. 연금소득의 개인지방소득세액 계산방식 개선(제93조제17항 신설)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거나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금소득 외의 다른 연금소득이 1천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해당 연금소득이 1천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연금소득 과세방식을 개선함.

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제 도입(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8까지 신설)

- 1)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함.
- 2)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도록 함.
- 3)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을 “3억원 이하” 구간은 2퍼센트의 세율로, “3억원 초과”인 구간은 2.5퍼센트의 세율로 정함.

- 4)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고,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도록 함.
- 5)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감면세액 및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함.
- 6)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경우 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감면세액, 수시부과세액 및 특별징수세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함.

사.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 조정(제103조의20제1항)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율을 구간별로 각 0.1퍼센트포인트씩 인하함.

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재해손실세액차감제도 도입(제103조의65 신설)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라 재해손실에 대한 법인세의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액에 「법인세법」에서 정한 자산 상실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하여 법인의 부담을 완화함.

자.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상한제 도입 및 주택의 세부담상한제 폐지(제110조제3항 신설 및 제122조)

- 1) 주택의 과세표준은 직전 연도 과세표준에서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고려한 과세표준상한율(0~5%)을 넘지 못하도록 함.
- 2)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상한제 도입에 따라 주택의 세부담상한제는 폐지함.

〈법제처 제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8호, 2023. 2. 28.,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와 미술품에 대한 물납을 허용하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납부유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 허가 및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허가의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요건을 완화하고, 연부연납 가산금의 계산 방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요건 완화(제15조제3항제1호가목)

종전에는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쳐 상속 대상 기업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상속 대상 기업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하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영농상속공제 요건 강화(제16조제2항, 제16조제9항 신설)

- 1) 종전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만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2)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과 관련하여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포탈 행위,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부정 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영농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의 사업부문별 계산(제34조의3제3항 및 제4항 신설)

법인이 사업부문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 이상으로 구분하고, 사업부문별로 자산, 부채 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시 사업부문별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및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되, 정상 거래비율을 초과하는 사업부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문을 하나의 사업부문으로 보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및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하도록 함.

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되는 배당소득의 범위 확대(제34조의3제15항)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배당소득의 범위에 사업연도 종료 후에 지급받는 배당소득 외에 사업연도 중에 지급받는 배당소득도 포함되도록 하여 중간배당에 대해서도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개선함.

마. 상속재산 가액 평가 시 할증 평가되지 않는 주식 등의 범위(제53조제7항 신설)

상속·증여재산인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가액을 평가할 때 20퍼센트 할증 평가하는 최대 주주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범위에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의 최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제외하도록 함.

바. 연부연납 제도 합리화(제68조제8항제2호 및 제69조제2항 신설)

- 1) 복수의 납세의무자가 공동으로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그 중 일부가 연부연납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한 연부연납을 취소하지 않고 그 연부연납 세액을 미납한 자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만을 취소하도록 함.
- 2)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는 가산금을 계산할 때 종전에는 연부연납 기간 중에 가산율이 변경된 경우에도 각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일 현재의 가산율을 해당 기간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연부연납 기간

중에 가산율이 변경되면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함.

사.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신청 절차 등 마련(제69조의2 및 제69조의3 신설)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납부유예신청서와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가업의 대표이사로 종사하지 않거나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는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아 납부유예된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등 납부유예의 신청 절차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아.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물납 허가 절차 등 마련(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5까지 신설)

- 1) 물납할 수 있는 문화재의 범위를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유형문화재 또는 민속문화재로 함.
- 2) 세무서장은 문화재 등의 물납 신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물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세무서장에게 물납을 요청하려면 그 통보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요청하도록 하며, 세무서장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물납 허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23. 3. 5.] [대통령령 제33311호, 2023. 2. 28.,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휴업·폐업한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진료기록부 등을 더욱 안전하게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휴업·폐업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7069호, 2020. 3. 4. 공포, 2023. 3. 5.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건의료 또는 사회보장과 관련된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휴업·폐업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80만원, 2차 위반 시 9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본인의 진료기록을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환자가 진료기록 열람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 요청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전자파 안심지대 인근에 송전선로를
매설하려는 자에게 전자파 안심지대를
우회하여 매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안양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 제5조제2항 등 관련

질의요지

- 가. 전자파 안심지대 인근(부지경계로부터 30m 이내)에 특고압 (154kV 이상) 송전선로를 매설하려는 자에게 전자파 안심지대를 우회하게 하거나 지하 30m 깊이로 매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나.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기지국 및 특고압 선로에 대하여 전자파 위험 등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 부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23-0002, 2023. 2. 22., 경기도 안양시]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가. 질의의 공통사항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이하 “안양시조례안”이라 한다)에서는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등을 전자파의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이 관내 어린이집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도록 하거나(제4조제1항) 아동·청소년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4조제2항), 전자파 안심지대 인근(부지 경계로부터 30m 이내)에 특고압(154kV 이상) 송전선로 매설을 위한 도로점용 허가 시 전자파 안심지대를 우회하게 하거나 지하 30m 깊이로 매설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제5조제2항), 이미 설치된 기지국 및 특고압 선로에 대해서도 전자파 위험 등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부칙 제2조)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안양시조례안이 규정하고 있는 사무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을 정하도록 한 「전파법」 제47조의2의 규정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안양시의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할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 제2호라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예시하고 있는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여 안양시의 자치사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도로법」에서는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시장 등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제61조제1항),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을 정한 「도로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전기관의 본선을 매설하는 경우 그 윗부분과 노면까지의 거리를 1미터 이상으로 하되 공사시행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0.6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제1호마목3))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도로점용허가 기준으로서 점용물이 우회해야 하는 지역이나 전기관 매설의 깊이에 관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안양시조례안 제5조제2항에 따라 전자파 안심지대 인근에 송전선로를 매설하려는 자에게 전자파 안심지대를 우회하게 하거나 지하 30m 이상 깊이로 매설하도록 권고한다고 하더라도 그 권고를 이행할지는 상대방의 임의에 맡겨져 있는 것이고,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도 없어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안양시조례안 제5조제2항의 규정 내용은 행정지도로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령의 위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장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권자로서 도로점용허가와 관련한 시장의 권고는 사실상의 강제력이 수반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안양시조례안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기지국 및 특고압 선로에 대하여 시장은 전자파 위험 등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시장이 일정한 조치를 권고한다고 하더라도, 권고를 이행할지는 상대방의 임의에 맡겨져 있는 것이고,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치된 기지국 또는 특고압 선로의 철거를 명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등의 규정도 없어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안양시조례안 부칙 제2조의 규정 내용은 행정지도로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령의 위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장이 소집한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게 회의참석수당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제3조 관련

질의요지

동장이 소집한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게
회의참석수당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의견23-0040, 2023. 2. 17.,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 즉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 “새마을조직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제2호),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제4호)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의 공익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것은 강서구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대한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서구의 소관 사무와 관련되는 경우라도 질의요지와 같이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게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률에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새마을조직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제3조제1항)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비 지원의 근거 규정이므로, 조직의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지급의 법률상 근거 규정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인 단체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그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면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시설의 설치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해당 시설의 설치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 등을 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새마을운동조직이 주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라는 점, 새마을조직법 제3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제3조제2호에서는 강서구청장이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 개개인에게 회의참석수당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동장이 소집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지는 않으므로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이 동장이 소집한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게 회의참석수당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에 세부 허가기준이 신설되기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벌크로리의
수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조례에 규정된 세부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경과조치를 해당
조례의 부칙에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서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관련

질의요지

조례에 세부 허가기준이 신설되기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벌크로리의 수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조례에 규정된 세부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경과조치를 해당 조례의
부칙에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22-0336, 2023. 2. 3., 충청남도 서산시]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0호에서는 허가받은 사항 중 벌크로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화석유가스법 제6조제1항 각 호에서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액화석유가스법 제6조제3항의 위임을 받아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시설 및 배치 기준 등 세부 허가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서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이하 “서산시조례”라 한다)가 2020. 1. 3. 제정·시행되었고, 서산시조례 부칙 제2조에서는 본문에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받은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두면서, 저장시설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설을 변경하거나 장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단서 규정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이에 서산시는 기 제정된 서산시조례의 부칙에 벌크로리의 수량을 증가하기 위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까지도 서산시조례 별표에서 규정한 허가지역이나 시설 및 배치기준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경과조치를 규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부칙’이란 본칙에 부수하여 그 법령의 시행일과 시행에 따르는 과도적 조치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본칙의 개정 사항 없이 부칙 그 자체로서 제·개정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예외적으로 종전 부칙에 오류가 있거나

법령의 제·개정을 통하여 도입한 제도의 시행을 원래 부칙에서 예정했던 것과 달리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본칙의 개정 없이 부칙만을 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2019. 4. 11. 회신 의견 19-0110 참조).

또한, 법령이 전문 개정된 경우가 아닌 한 그 개정 시 종전 법령 부칙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명시적인 조치가 없다면 종전 법령의 부칙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1116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자치법규의 입법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면 개정이 이루어진 적이 없는 서산시조례의 부칙은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실효되지 아니한 서산시조례의 부칙에 해당 조례 시행 전에 허가를 받은 자가 벌크로리의 수량을 증가하기 위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산시조례에서 정한 세부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것이 서산시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입법취지와도 조화를 이루는 가장 적당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한다면 해당 내용의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것이 반드시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2020. 1. 3.에 제정·시행된 서산시조례의 부칙을 시행 후 개정하여 소급적용하는 경우에 그 내용은 「행정기본법」 제9조에 따른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거나 서산시조례 부칙이 신설될 당시 입법 취지 등에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할 것인바, 서산시조례 시행 전에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는 신규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와 달리 서산시조례의 세부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에 형평성 훼손의 문제가 없는지와 서산시조례 부칙 제2조 단서에서 서산시조례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사유로 시설 노후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 설비의 증설이 없는 제한적인 상황만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액화석유가스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정도로 중요한 사항인 벌크로리의 수량 증가의 경우에까지 서산시조례의 적용 예외로 두는 것이 타당한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청장이 특정 지역 내 시장 및 상점가에서 연 1회 이상 소방훈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제6항 관련

질의요지

구청장이 특정 지역 내 시장 및 상점가에서 연 1회 이상 소방훈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22-0390, 2023. 2. 1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견

구청장이 특정 지역 내 시장 및 상점가에서 연 1회 이상 소방훈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 즉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에 대하여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서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이라 한다)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서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고,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소방본부장”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하고,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에서는 소방서장은 시·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화재예방법 상의 소방훈련은 시·도의 소관사무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 1 제6호나목에서는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와 구조·구급에 관한 사무를 시·도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

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소방기본법」 및 화재예방법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소방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두고 있지 않고, 오히려 「소방기본법」 제2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화재예방법 제3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예방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소방기본법」 및 화재예방법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에 실정에 맞는 화재예방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장려하는 취지라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65조에서는 상인회는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고(제4항제6호),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제7항)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서 지역 내 화재발생의 위험이 높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구청장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에 관한 사항을 시·군·구의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이 「소방기본법」 및 화재예방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그 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관하여는 조례로 이를 침해할 수 없으며, 나아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도 그 사무집행에 관한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부산진구조례안”이라 한다) 제4조제6항에서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당감권역, 부전마켓타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방훈련의 실시와 관련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라고 할 것이고, 그 권한에는 소방훈련의 실시 여부, 소방훈련을 실시하는 지역 및 횟수 등에 관한 사항의 결정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산진구조례안 제4조제6항과 같이 구청장에게 특정 지역에서 특정 횟수의 소방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소방훈련 실시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장이 특정 지역 내 시장 및 상점가에서 연 1회 이상 소방훈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략)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 (생략)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6.·7.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생략)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① 법 제14조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소방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소방본부장”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5.·6. (생략)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6조(서장) ① 소방서에는 서장 1명을 두며, 서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서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예방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예방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생략)

제37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 등(이하 이 조에서 “근무자등”이라 한다)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이라 한다)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생 략)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상인회) ① ~ ③ (생 략)

④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 5. (생 략)

6.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7. (생 략)

⑤·⑥ (생 략)

⑦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 ⑫ (생 략)

다움아트홀 '캔버스, 나무, 도자기에 시를 그리다' 전시회

- 한국문인협회 홍성지부 회원 캘리그래피 작품 31일까지 전시 -

충남도의회가 '다움아트홀' 올해 첫 전시회를 개최한다.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2일부터 31일까지 도의회 1층 '다움아트홀'에서 (사)한국문인협회 홍성지부 회원의 작품을 선보인다. 봄을 맞아 개최되는 이번 전시전은 '캔버스, 나무, 도자기에 시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전시한 서각작품 및 도자기에 캘리그래피로 그려넣은 시 작품들을 모아 전시하며, 황정옥 시인의 '그대생각'을 포함한 40여개 작품을 4주 동안 전시할 예정이다.

충남도의회 다움아트홀은 충남지역의 미술 발전과 도민의 문화생활 향유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1월 개관했으며, 생활문화동아리 회원은 물론 전문 작가들의 참여로 수준 높은 작품들을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많은 도민들께서 다움아트홀에 방문하셔서 지역예술인들의 작품들을 감상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 정 정 보

- ❖ 발 행 월: 2023년 3월
- ❖ 발 행 처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 ❖ 연 락 처 : (041) 635-5124
-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nam.go.kr>